

# 2022년 의료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스타트업 추가모집 공고

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의 의료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『2022년 의료창업 활성화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청년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일

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

## 1. 모집 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대구시 5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의료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료분야(의료기기, 의료서비스, 바이오·헬스케어 등)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대구 의료산업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('23~'27)」, 대구시 「대경 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(Hustar)」 등 의료산업 육성을 가속화 하기 위해 의료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 도모

- 지원대상: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며,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스타트업(사업장(본점)이 대구시내 소재)

□ 지원규모: 1개社 내외(기업 당 13,000천원)

□ 지원내용: 사업화자금 지원,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

□ 지원분야(안)

구분	분야	세부 분야
1	의료기기	• 수요자 맞춤형 의료기기, 의학용품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아이템 등
2	의료서비스	• 질병을 치료·간호·예방·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
3	바이오	• 신약 및 제약(의약품, 의약외품) 등 새로운 물질 개발 등
4	헬스케어	• 건강유지와 건강관리에 관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
5	의료관광	• 의료 관광 연계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

## 2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
- 공고일 기준 대표가 청년이고,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기업
- 사업장(본점)이 대구시내 소재한 창업기업

### 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: 2015년 5월 3일 ~

\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
\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\* 다수사업자: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

\* 공동·각자대표: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▶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(본점)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

▶ 청년기준: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만 19세 ~ 만 39세

(1982년 5월 3일 ~ 2003년 5월 2일 사이 출생자)

## 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### 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\* 단, 신청 접수 마감일('22.05.13.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###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\* 단,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 접수 마감일('22.05.13.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
### ▶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- \* 지원제외 대상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- \*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### ▶ 2022년도 행정안전부 “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”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

- \* 선정되기 전 세부 사업별 중복접수는 가능하나, 사업 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 하며, 최종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함
- \* 사업종료 이후 감사 절차 과정에서 중복 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

### ▶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### ▶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(기업)

### ▶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 등으로 참여중인 자

### ▶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### ▶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### ▶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### 3. 지원 내용

□ 지원기간: 협약일로부터 ~ 2022년 9월

□ 지원내용: 사업화자금 지원,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

구 분	지원대상	내 용
① 사업화자금 지원	의료분야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스타트업 (청년 1명 이상 고용 必, 사업장(본점)이 대구시내 소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화자금 지원(10개사)</li> <li>- 기업당 13,000천원 지원</li> </ul>
② 교육	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협약식 및 간담회 운영</li> <li>- 선정기업 간의 BM 공유 및 네트워킹 장 마련</li> <li>- 교육 : e나라도움 교육, 세무회계 등</li> <li>• 교육 지원</li> <li>- 창업자대상 교육 : 인증, 투자·보증, 법률 등</li> </ul>
③ 멘토링·컨설팅	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멘토링·컨설팅 지원</li> <li>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(DASH)-첨복재단의 멘토 POOL을 활용하여 성장단계에 맞는 기술자문 멘토링·컨설팅 제공</li> </ul>
④ 세미나	선정기업 및 의료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미나 지원</li> <li>- 정부 정책 동향, 의료분야 주요 이슈 및 최신트렌드 분석, 졸업기업초청 성공 창업특강, 창업유관기관 지원사업 소개 등</li> </ul>
⑤ 의료분야 투자·보증 네트워킹 데이	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료분야 투자·보증 네트워킹데이 운영</li> <li>- 판로개척 및 자금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데이 개최</li> <li>- 의료분야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</li> <li>- 의료분야관련 전문 VC 초청을 통한 IR포럼 운영</li> <li>- 투자·보증 컨설팅 부스 운영</li> </ul>
⑥ 성과공유회	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과공유회 운영</li> <li>-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의 사업이행 실적 및 주요성과 공유</li> </ul>
⑦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지원	3개社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용 사무공간 제공</li> <li>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보육공간(전대동의서 지원)</li> </ul>
⑧ 프로그램 연계 지원	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계 지원</li> <li>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후속지원 연계</li> </ul>
⑨ '23년 후속 지원	'22년도 1년차(신규) 선정기업 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년차 인건비 지원</li> <li>- '22년도 1년차(신규) 지원기업 중 추가 청년 채용 시 인건비 1년(연 2,400만원) 지원</li> </ul>

## 4. 신청 및 접수

### □ 신청·접수기간

- 2022년 5월 2일(월) ~ 2022년 5월 13일(금) 18:00까지

### □ 신청방법

- 대구창업허브(<https://startup.daegu.go.kr>)를 통해 온라인 신청

\* 유의사항: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

- 제출서류: 별첨 1 참조

구분	제출 서류		비고
필수	사업계획서 및 개인(기업) 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		별첨 1
	개인·법인사업자 공동 제출 서류	사업자등록증	홈텍스
		4대보험 가입자 명부	4대보험사이트
	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기업용)	홈텍스/민원24
법인사업자	법인등기부등본 (1개월 이내 발급분, 말소사항 포함)	인터넷등기소	
제출처	상기 위 제출 서류는 반드시 날인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: 대구창업허브( <a href="https://startup.daegu.go.kr">https://startup.daegu.go.kr</a> ) 온라인 신청		

※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(미비)시, 서류 전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

### □ 세부 추진일정

추진 절차	추진 내용	추진 일정(안)
공고 및 접수	대구창업허브( <a href="https://startup.daegu.go.kr">https://startup.daegu.go.kr</a> ) 온라인 신청접수	공고일 ~ 5.13.(금) 18:00까지
사전 서류검토	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여부	'22.5월 중
서류평가	서면 평가위원회 개최	'22.5월 중
발표평가	발표 평가위원회 개최	'22.5월 중
선정평가 결과통보	주관기관(대구센터) → 신청 기업	'22.5월 중
수정 사업계획서 제출	별도 안내	'22.5월 중
협약체결(설명회)	주관기관 ↔ 선정기업	'22.5월 중
사업수행	필요시, 수시점검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	협약일 ~ 9.30.(금)
협약 종료 및 최종점검	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점검	'22.11월 중

## 5. 평가 및 선정

### □ 평가 절차 및 기준

- (평가절차)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선정
  - \*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(제외) 자격 조건에 대한 요건검토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자격 조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
- (평가기준)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(평가항목) 창업아이템 및 시장에 대한 문제인식(30%), 실현가능성(30%), 성장전략(30%), 팀 구성(10%) 등

구분	평가항목	점수		우선순위
문제인식(Problem)	- 제품·서비스의 개발동기	10	30	3
	- 제품·서비스의 목적(필요성)	20		
실현가능성(Solution)	- 제품·서비스의 개발 방안	20	30	2
	-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	10		
성장전략(Scale-up)	-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	10	30	1
	-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	20		
팀 구성(Team)	- 대표자·직원의 보유역량	5	10	4
	-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	5		
합 계		100		

- ① 1단계 평가: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- ② 2단계 평가: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발표평가로 선정
  - \* 비대면 발표 평가시에는 온라인 줌(ZOOM)을 활용하여 진행
  - \* 기업별 15분 발표(발표 8분 + 질의응답 10분)

### □ 최종 선정

-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
- 최종 선정 이후 평가위원 질의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

## 6.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7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### □ 신청 관련 유의사항

-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,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실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, 신청·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## 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‘발표평가’ 등 과정에서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운영됨
-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
## □ 문의처

- 기타 사업 관련 및 신청, 접수 관련된 문의는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바람
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김수미 매니저  
(053-359-3628 / smkim67@ccei.kr)

□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

비목	정의
재료비	▶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▶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▶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
지급수수료	▶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* 회계정산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
광고선전비	▶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- ※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 ~ 제48조(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)를 참고,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
- ※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며,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선정이후 달라 질 수 있음
- ※ 예산 비목 중 지급수수료 내 ‘회계정산비’ 는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있으며, 사업비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별 총 사업비 내에서 동일한 금액(500,000원)으로 의무 책정하여야 함